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03년 6월 20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6. 3(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나. 회부일자 : 2003. 6. 20(금)
다. 상정일자 :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 6. 20)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표준안에 따라 청사 규모를 규정하고 대부료 연체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 (안 제22조)
-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율 차등인하 (안 제28조)
- 청사기준을 규정 (안 제47조)
- 청사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 (안 제47조)
- 50억원 이상 공용·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청사 설계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 (안 제47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평창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전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입니다.
-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 - 잡종재산등의 매각대금 이자율을 1~2%인하하고 연체료는 기간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토록 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. 이는 은행권금리 인하에 형평을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.
 - 종전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청사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청사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표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표준안을 모델로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이 청사·종합회관 신축시 적정규모를 제시하므로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-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잡종재산의 개념은?	○ 행정재산(공용재산·공공용재산·기업용재산) 및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(국유재산법 4조 4항)을 말함.

5. 토론요지 : 집단민원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온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3년 6월 20일
제안자 :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 민원의 편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2. 수정주요골자

- 안 제39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.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9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.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39조의2(수의계약매각 범위 등)</p> <p>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1-3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1-3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설)</u></p>	<p>제39조의2(수의계약매각 범위 등)</p> <p>① 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-3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1-3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 제1항 및 구화 전정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토지를 현경작자에게 매각할 때,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매수 신청한 토지에 한한다.</u></p>